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46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594호)	서삼석의원	2024.07.10.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0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03.19.)에서 상정, 축조심사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110호)	장동혁의원	2024.08.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03.19.)에서 상정, 축조심사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846호)	윤준병의원	2025.12.0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1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03.19.)에서 상정, 축조심사

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9.)

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

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15조의 제목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을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선정하여”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정한다”를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합의사항”을 “합의 또는 승인 사항”으로,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로, “보조항로를”을 “공영항로를”로, “보조항

로사업자의 선정을”를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보조항로의”를 “공영항로의”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선정 방법”을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제15조의2제1항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을 “운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객선이”를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보조항로의”를 “공영항로의”로, “보조항로 운항 명령”을 “운항명령”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를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단체”를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후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면허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5조(면허기준) ①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함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u></p>
<p>제15조(<u>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u>)</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u>보조항로</u>”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u>보조항로</u>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u>보조항로사업자</u>”라 한다)를 선</p>	<p>제15조(<u>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u>)</p> <p>① ----- ----- ----- ----- ----- -----<u>공영항로</u>----- -----<u>공영항로</u>----- -----<u>공영항로</u>-----</p>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절차와 결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영항로-----
-----공영항로-----
-----공영항로-----
-----공영항로-----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영항로-----
-----공영항로-----
-----공영항로-----

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
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
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
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
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
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
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
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
이-----합의 또는 승인 사
항-----
-----해당 공영항로사업
자가-----공영항로를-----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

⑤ -----공영항로
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
이-----
-----공영항로의-----

-----공영항로
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
에게-----

⑥ -----
-----공영항로-----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신설>

⑦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

-----공영항로-----
-----.

- 1. 2. (현행과 같음)
- 3. -----
-----공영항로-----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⑦ 공영항로-----
-----공영항로-----
공영항로-----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

-----.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
-----공영항로-----

-----.

② -----

-----운항-----

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
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
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

-----.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
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
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
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
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
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
정 기준과 지급 방법·시기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

1. -----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은 조

우

2. (생략)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

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 영기관이-----

2. (현행과 같음)

3.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공영항로의-----운항명령-----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